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월)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윤종호 의원 외 15명

2. 제정이유

-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 대두, 미래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과 제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각 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 장려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시적인 일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며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한 노력이 희미해진 것에 대해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환기시키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1회용품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소각할 경우 악취와 유해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 매립할 경우 매립용적이 많이 필요하고 분해기간에 수백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미래사회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조례안은 위 배경의 필요성을 토대로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등에 1회용품의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의 자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는 교육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매년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교육감이 각 소속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는 교육감, 교육행정기관의 장, 학교장이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교육감, 교육행정기관의 장, 학교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다. 종합의견

- 1회용품에 관련한 환경문제는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심각성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대응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이 권장되고 있어 기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열어진 상황임
- 또한,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

라스틱 폐기물과 일회용품의 감량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정책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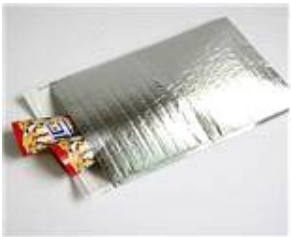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환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시행과 1회용품 사용 및 구매제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장려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교육적 효과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대상 예시(환경부)

구 분	예 시		
규제대상	①	②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			
선물세트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			
규제되지 않는 대상	①	②	③
종이 재질 쇼핑백 (종이+종이끈)			
생분해성수지 (EL724 환경표지인증)			
B5규격 (182mm × 257mm)			

구 분	예 시		
규제되지 않는 대상	①	②	③
망사·자루·박스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 이상 봉투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셀 수 있는 제품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 발생 또는 녹을 수 있는 제품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			
*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참고 2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9.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금지
10.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쇼핑백*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지 판매(무상 금지)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